

Ⅲ 대향 또는 동일방향 진행보행자

편 집 : 손해사정사 박성정¹⁾

소 속 : 손해사정법인 가나

인도를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행자의과실이 없다. 그러나 건물이나 주차장 또는 공사현장 진입로, 아파트 단지 진입로, 차도에서골목길로 접어드는 지점 등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곳에서는 보행자도 차량진행상황에 주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보행자의 과실을 정함에 있어① 사고시간(주간 또는 야간), 날씨(비, 안개, 눈등), 사고지점(산간, 무인지대, 굴곡지점) 등, ② 보행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 ③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보고 보행하였는지 여부, ④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인지 여부등이 고려될 수 있다.

(서울민사지법 기준례, 1983년)

기본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차량
인도 차도 구별있는도로	인도보행	0	100
	차도보행	20	80
	도로좌측단	0	100
인도 차도 구별없는도로	도로 우측단	10	90
	단, 골목길의 경우	0	100
	도로안쪽	20	80

상황구분	판결요지	피해자 과실	사건번호
보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	심야(01:10), 편도1차선을 20km로 진행중 택시를 타기위해 차도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	25%	서울지법 98나64294
	야간에 보차도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걸어가다 뒤에 뒤에서 오는 차량에 의해 충격당함. 피해자과실 20%	20	서울고법 89나40428

1) 경력 20년의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前) PNS손해사정법인, (前) PNS법과학기술연구소, (前) 교통방송 및 보험신보 기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석사) “논문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판례중심)”

	편도4차선의 4차선 시속 40km로 가다가 앞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 보도로 올라가 버스가 보도상의 가로수 충격,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보도상의 피해자 충격	0%	서울고법 86나3899
	T자형 3거리, 피고 승용차 정지한다는 것이 악셀레이터 밟아 보도로 돌진, 보행자 다침.	0%	서울고법 86나2512
	봉고차가 보도 변의 모래함 들이받아 보도상의 원고 충격	0%	서울고법 86나2672
	노퍽 6m의 외곽도로, 화물차 추월하려다 운전미숙으로 맞은편 도로의 인도로 뛰어든 승용차가 체육관 수련생으로 다른 수련생들과 열지어 인도 쪽으로 뛰어오고 있는 피해자 충격	0%	서울고법 87나2174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심야(00:15) 70km로 진행하다 농공단지 앞 44번 국도상을 술에 만취한 채 도로의 한가운데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 고 있던 자를 20m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격 사망케한 사안	50%	서울지법 9 2 가 합 43809
	비포장 인도 있음에도 피해자 포장도로 안쪽으로 0.6m 들어와 좌측통행해 오다가 추월금지 구간에서 추월하던 차량에 충격당 함.	50%	서울고법 87나2173
	야간, 도로 좌측 가장자리 아닌 안쪽 부분으로 걸어오다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에 충격한 사안	10%	서울고법 90나8581
	편도2차선 국도, 비포장 부분있음, 아스팔트 포장 부분의 가장 자리 걷다가 술취한 경관이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대신 악셀레이터 밟아 사망케 함, 시속 60km.	5%	서울고법 86나4306
	노퍽 10m, 우측단으로부터 안쪽 3m지점 걸어감. 시속 30km 의 승용차에 뒤에서 받침.	15%	서울고법 87나840
	편도1차선, 포장부분은 편도 폭3.1m, 양옆으로 비포장 구분, 야간, 비, 원고는 우측단에서 20cm 포장부분을 걷다가 뒤에서 오는 피고 트럭에 치임, 피고는 만취해서 기억 무.	20%	서울고법 86나2585
	왕복2차선, 노퍽9.7m, 포장부분 7m, 전차 진행방향 우측 1.5m, 좌측2m의 비포장부분, 야간 피고는 전조등이 고장난 전차를 운전하여 행렬을 지어 진행, 원고(19세) 친구와 어깨동 무하고 비포장 끝부분으로 피하지 않고 도로 안쪽포장부분에 근접보행.	10%	서울고법 86나4002
	편도2차선, 비포장부분이 있는 도로, 술마시고 택시 잡으려고 차도의 끝 포장도로 위를 걸어오다 마주오는 트럭에 치임, 야 간.	10%	서울고법 86나2619
	사고경위불명, 야간, 시속75km, 우측으로 보행 중인 원고들을 피고 봉고트럭으로 치임.	0%	서울고법 86나402
노퍽7.1m의 편도1차선, 비포장 도로의 우측통행, 후행버스가	5%	서울고법	

충격. 우측통행 과실 5%		87나2431
비포장 도로 부분있음, 06:00, 피해자 포장부분 우측통행.	20%	서울고법 87나797
야간, 보`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상을 우측으로 보행중인 피 해자를 뒤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함.	10%	서울고법 89나38531
야간, 편도1차선 지방국도, 포장 안 된 노건이 있음에도 포장 된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다 뒤에서 진행해 오는 피고 차에 충 격 당함.	20%	서울고법 90나15022
아침, 버스 우회전하여 중앙선 및 보, 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 로로 진입하던 중 그 이면도로의 우측단을 걸어가는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 피해자 과실 10%	10%	서울고법 89나49661
편도1차선, 폭1.2m의 비포장인 길 가장자리 구역 있음, 지방 국도, 비, 도로중앙으로 걸어오다 마주오는 차에 받힘, 음주보 행.	40%	서울고법 86나2805
길을 잘못 든 전차, 반드시 받아야 할 유도병의 안내없이 후진 하다가 삼거리 중앙에 세워진 석축 이정표 받고 피하던 원고 (13세)가 다침.	0%	서울고법 86나3752
야간,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편도 1차선 국도, 피고 운전 트 럭이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자전거 타고 중앙선 근접 하여 앞서가는 망인 발견 못하여 충격함. 중앙선 근접운행한 망인과실 30%	30%	서울고법 90나26046
주간에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우회전하다가 위 학교 운동장에서 나와 걸어가던 보행자 충격, 도로변으로 붙어서 보행하지 아니하고 3미터나 떨어진 도로 중앙부분으로 걸어간 보행자과실 30%	-	부산고법 87나101
야간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차로의 반대방향에서 마주 걸어오던 보행자 충격, 2차로 도로의 갓길 구분선으로부터 폭1.3미터 정도의 갓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갓길 구분선으로부터 차도 안으로 약 0.8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을 보행한 과실 30%	30%	광주고법 96나3035
비오는 자정 무렵에 편도1차로 지방도로상을 술을 마신 채 도 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 중 충격 당함. 피해자 과실20%	20%	서울지법 2 0 0 1 나 19027
비오는 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 주차장 진입로를 횡단하 던 중 좌회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승용차에 충격당함. 피 해자과실 15%	15%	서울고법 2 0 0 0 나 52690
차고지 입구 이면도로 보행 중 좌회전하여 차고지에 들어오는 버스에 충격 당함. 피해자 과실 20%	30%	서울고법 2 0 0 2 나 22139